

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
### 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2.6.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1123(2020.11.29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(12.6)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3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\*\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”를 참고해 주십시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2.8(0시) ~ 2020년 12.28(24시)까지

○ 대상 지역 : 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

\*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

### 1)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유흥시설 5종\*
  - \* 클럽 · 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#### 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

-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 · 카페(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)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  -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 ·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

#### 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# 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 ·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2)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일반관리시설 14종\*
  - \*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 · 멀티방, 실내체육 시설, 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 · 워터 파크, 이 · 미용업, 상점 · 마트 · 백화점(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#### 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3) 모임 · 행사
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  - 조치 내용 : 100인 이상 모임 · 행사 금지
   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    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- \*전시회 · 박람회 ·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#### 불임 5. 수도권 외 지역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## 4) 종교시설

- 대상 시설 : 종교시설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#### 불임 6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## 5) 고위험사업장

-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#### 불임 7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## 6) 교통시설

- 대상 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#### 불임 8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 7) 국공립시설

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    - \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## 8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 -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    - 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

## 9) 스포츠 관람

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%로 관중 입장

## 10)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 - \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-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

## 4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 - 각 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자체,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 
장**

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4개 시도

주무관	강재희	행정사무관	이성경	생활방역팀장	김정숙	전략기획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	장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2020. 12. 6.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	박능후
		총괄책임관	장	부본부		본부장	
				강도태			

**협조자**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2020. 12. 6.) 접수  
중앙사고수습본부-31739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[jaehuekang@korea.kr](mailto:jaehuekang@korea.kr) / 비공개